

포털 현장에서 바라본 잊혀질 권리



글 이진규
네이버주식회사 정보보호실 부장

1. 들어가며

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소에서 “경과한 시간을 고려하고, 목적에 관련하여 … 부적당 혹은 부적절하거나, 더 이상 적절하지 않거나 지나친 경우(inadequate, irrelevant or no longer relevant, or excessive in relation to those purposes and in the light of the time that has elapsed)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링크를 삭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잊혀질 권리의 개념이 실질적인 권리의 개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와 같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로 말미암아 유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검색엔진 서비스 제공자인 Google, Yahoo!, Microsoft 등은 잊혀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웹 페이지(web form)를 즉시 제공하는 한편,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비추어 기업별로 검증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링크의 삭제요청을 신청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실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조치’나 ‘이용자의 권리’ 등을 통해 충분히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본격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4일 ‘제3기 방통위 상임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잊혀질 권리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며 “법제화를 통한 삭제요청 범위 등 규정, 표현의 자유 및 공익적 목적 등은 예외로 인정”하는 방향의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 정보기술(IT) 부문 주요 정책과제를 밝힌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사망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인터넷 계정 상속 도입 등도 함께 논의 주제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제3기 방통위 상임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출처: 연합뉴스, 「방통위의 비전 및 주요정책과제」, 2014년 8월 4일자)

이와 같은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가장 초점이 맞추어지는 부분은 잊혀질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령체계에서 잊혀질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잊혀질 권리와 다른 권리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어느 법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가, 인격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하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과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한 불법행위(torts)로부터의 보호 대상으로 프라이버시권을 인식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느 입장에 서야 하는가 등이 될 것이다. 또한, 잊혀질 권리에 대한 주장에 반대되는 개념인 잊지 말아야 할 의무, 혹은 기억해야 할 의무(the duty to remember)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가도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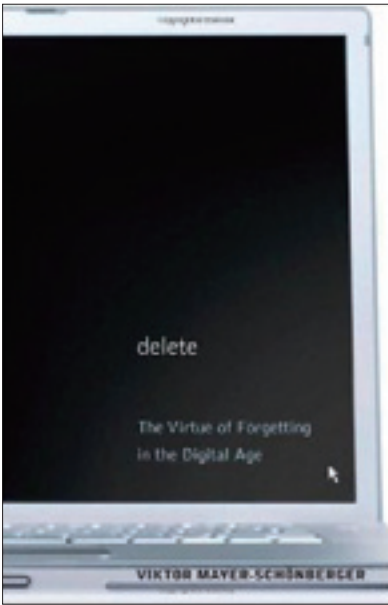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잊혀질 권리에 대해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위

에서 제시한 ‘초점’이 되는 부분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2. 잊혀질 권리란 무엇인가?

세계적인 프라이버시 전문가인 Viktor Mayer-Schönberger는 자신의 저서 “Delete: The Virtue of Forgetting in the Digital Age”를 통해 망각의 권리(the right to oblivion)를 설명하면서 ‘망각은 인간의 기억에 있어 자연스러운 것임에 반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인터넷의 기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를 회복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인간적 삶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프랑스 법이 인정하고 있는 ‘망각의 권리(Le droit a l’oubli, The right of oblivion)’와도 일맥상통한 것이며, 해당 개념은 유죄선고를 받은 범죄인이 그의 복역기간을 마치고 재활을 한 경우 그의 유죄판결이나 복역에 관련된 사실의 출판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¹⁾

1) Jeffrey Rosen, “The right to be forgotten” SLR Online, 64 STAN. L. REV. ONLINE 88. Feb. 2012



Viktor Mayer Schönberger의 저서 「Delete: The Virtue of Forgetting in the Digital Age」 표지

이와 같은 잊혀질 권리는 개인이 갖는 '기억'이 망각으로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것 또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망각의 절차를 구현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회복을 피하고자 하는 논의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청구권(right to erasure)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럽연합이 현재 논의 중인 유럽정보보호규정(안)에서는 기존에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청구권으로 통합하였으며, 유럽연합은 유럽정보보호규정(안)의 수정문안(compromise text)을 통해 "삭제청구권은 기존의 잊혀질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기 내용에서 살펴보면 '망각의 권리'에서 시작된 잊혀질 권리의 논의는 결국 법 제도로써 그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삭제청구권으로 발전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잊혀질 권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권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구현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의 논의는 삭제청구권으로 귀결되고 있지만, 실제 해당 권리의 내용이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3.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판결의 이해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검색엔진의 정보색인화(indexing) 작업이 유럽연합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며, 구글 등 검색엔진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관리자에 해당하고, 정보색인화 작업이 미국에서 이루어지더라도 EU 회원국(본 판결에서는 스페인)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구글 등 검색엔진 서비스 제공자는 웹페이지가 적법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동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제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체로 이처럼 알려진 판결의 요약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

과 같은 점 역시 판결로 인해 명확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유럽사법재판소가 인정한 잊혀질 권리는 이름과 같이 개인정보를 색인화한 것에 대한 삭제에 한정된 것이다. 공공기록과 같이 색인화된 웹페이지를 검색엔진 또는 게시자(publisher)로부터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과 같은 개인정보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한 결과로 나타나는 검색결과가 존재하는 경우 그 링크를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 3자의 웹페이지에 포함된 개인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일반적으로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보주체(data subject라고 함)의 권리는 검색엔진 운영자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정보주체의 이름 등 개인정보로 검색된 정보에 접근하는 일반 대중의 이익에 우선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주체의 삭제 요청 사유가 표현의 자유, 출판권 및 대중의 알 권리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주장할 ‘중대한 수준의 적법한 사유(compelling legitimate grounds)’에 해당되어야 한다. 때문에 정보주체의 공적 생활에서의 역할과 같은 특별한 이유에 근거하여 해당 정보에 접근하는 일반대중의 이익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꾸어 말하면, 검색엔진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삭제 요청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포함한 다양한 쟁점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판결은 스페인에서 구글 검색의 광고를 홍보하는 자회사인 Google Spain의 존재로 말미암아 1995년 유럽정보보호지침과 스페인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역외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EU 역외에서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거나 정보색인을 하지 않는 검색 사업자의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잊혀질 권리의 이행부담을 지지 않는다고 이해된다.

넷째, 본 판결로 인해 EU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색엔진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검색 결과와 기타 지역에서의 검색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즉 전 세계 누구라도 동일한 내용의 잊혀질 권리가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섯째, 본 판결의 배경이 EU 검색시장을 90% 이상 점유하고 있는 미국 기반의 글로벌 기업 Google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라는 점, 그리고 통상적으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을 기속해왔던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Niilo Jääskinen(Advocate General)의 의견도 본안에 대해서는 “1995년 EU 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일반적인 잊혀질 권리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한 EU 법무관 Niilo Jääskinen(출처: 유럽사법재판소 홈페이지[curia.europa.eu])

침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이익에 해가 되거나 반한다면 자신이 고려하는 개인정보의 전파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인 잊혀질 권리(a general right to be forgotten)’를 규정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아 EU와 미국 간 디지털 패권에서 보호주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잊혀질 권리의 권리성에 대한 확정적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²⁾

4. “현장”에서의 잊혀질 권리

지난 7월 31일에 Google France에서 유럽연합 개인정보 연구반(Article 29 Working Party)에 제출한 구글의 잊혀질 권리 판결 대응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7월 18일 까지 구글이 잊혀질 권리 판결에 따라 삭제 요청을 받은 건수는 약 91,000건에 달하며 328,000개 이상의 URL 삭제 요청이 접수되었다고 한다.³⁾



이와 같은 요청 가운데 약 53%에 대해 삭제처리를 하였고, 15%에 대해 삭제 판단을 위한 더 자세한 정보를 삭제요청자에게 요구하였으며, 32%에 대한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한다. 한 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링크삭제 요청 가운데 약 50% 가량이 타 사이트의 콘텐츠에 대한 검색 링크 제거를 노린 경쟁 사이

트의 어부징(abusing) 행위로 판단되는 등 잊혀질 권리 요청이 어부징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잊혀질 권리에 대한 구글의 대응 현황을 살펴볼 때, 과연 이러한 방식의 권리 보장이 실질적으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권리 보장과 일반대중의 다른 기본권 충돌에 있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자연스레 의문이 앞선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지만, 다수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프라이버시 이슈에 민감한 우리나라에서도 잊혀질 권리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적잖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바라본 잊혀질 권리의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2) Opinion of Advocate General Jääskinen, delivered on 25 June 2013 (1), Case-C131/12, Google Spain SL/Google Inc. v 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AEPD)/Mario Costeja Gonzalez (reference for a preliminary ruling from the Audiencia Nacional (Spain) Available at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docid=138782&doclang=EN>

3) More available at <https://docs.google.com/file/d/0B8syai6SSfiT0EwRUFyOENqR3M/edit>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제1항은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계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등에서도 개인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이나 삭제 등 잊혀질 권리의 핵심이 되는 ‘삭제요구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에 법률적 장치로써 충분히 잊혀질 권리의 내용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잊혀질 권리’를 재차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나 몰이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일반대중의 알 권리와 같이 상충되는 권리와 충돌의 경우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선행되어야 한다. 공인(public figure)에 대한 일반 대중의 알 권리와 더불어 그들에게 기울어져 있는 권력의 불균형에 맞서기 위한 ‘잊지 말아야 할 의무(the duty to remember)’에 대한 논의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휴갈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환경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내려진 판결 내용 자체가 매우 추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삭제의 판단을 정보관리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둬으로써 거꾸로 서비스 제공자(여기서는 ‘구글 유럽’)의 권한과 패권을 오히려 더 강화할 소지가 커졌다는 지적도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본 판결이 EU와 미국의 디지털 패권의 다툼에서 촉발된 것이라는 시각을 고려했을 때, 유럽사법재판소에서 개별 사안에 대해 내린 판결의 결과를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법제화하였을 경우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처할 수 있는 우리의 정보통신 기업의 입장에 대해서도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Google은 오는 9월부터 잊혀질 권

Google Advisory Council 8-1



The Advisory Council to Google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How should one person's right to be forgotten be balanced with the public's right to know?

A recent ruling by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found that European law gives people the right to ask search engines like Google to remove results for queries that include their name.

Since then, we've received removal requests on all sorts of content: serious criminal records, embarrassing photos, instances of online bullying and name-calling, decades-old allegations, negative press stories, and more.

For each of these requests, we're required to weigh, on a case-by-case basis, an individual's right to be forgotten with the public's right to know.

We want to strike this balance right. This obligation is a new and difficult challenge for us, and we're seeking advice on the principles Google ought to apply when making decisions on individual cases. That's why we're convening a council of experts.

We're just getting started, but during this process we also want to hear your input, too – this is all about your rights online, and the Internet provides an incredible forum for discussion and debate.

구글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자문단 소개 페이지 (출처 : Google Advisory Council 소개 페이지
[www.google.com/advisorycouncil] 캡처)

리에 대한 자문단(advisory council)을 구성하여 유럽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대중의 반대 의견을 청취하는 순회 미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에는 세계적인 온라인 백과사전 제공자인 Wikipedia의 창업자 Jimmy Wales도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기업이 연합하여 잊혀질 권리 판결에 대해 대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충분한 정책적 고려 없이 어느 일방의 판단에 따라 법제를 변경하였을 때의 파장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⁴⁾

4) Google은 잊혀질 권리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Formal request for public comment and evidence"라는 웹 사이트를 개설하고, 유럽 순회 미팅 계획을 밝히고 있음. More available at <https://services.google.com/fb/forms/advisorycouncilcomments/>

5. 나아가며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무분별한 노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대응책으로써의 법 제도적 보호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장”의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이에 대한 보호 대책은 기술적, 관리적,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명제에 동의를 표할 것이다.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에서 판결된 ‘잊혀질 권리’의 권리성과 사회적 함의, 그리고 비판 없는 법제화로 인한 부정적 파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도입하였을 경우 다른 사회적 가치나 개인, 또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충돌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인류는 ‘망각’보다는 기억, 특히 과거의 잘못된 사례에 대한 기억과 반성으로 발전해 온 역사가 있다는 사실 또한 잊혀질 권리와 더불어 ‘잊지 말아야 할 의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는 점도 주지해야 한다. 현재 법제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충 필요성을 논의해야지,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다고 또는 흔히 하는 이야기로 ‘팬시(fancy, 멋들어짐)한 언어’에 휩쓸려 현상을 무시한 옥상옥의 법제 개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